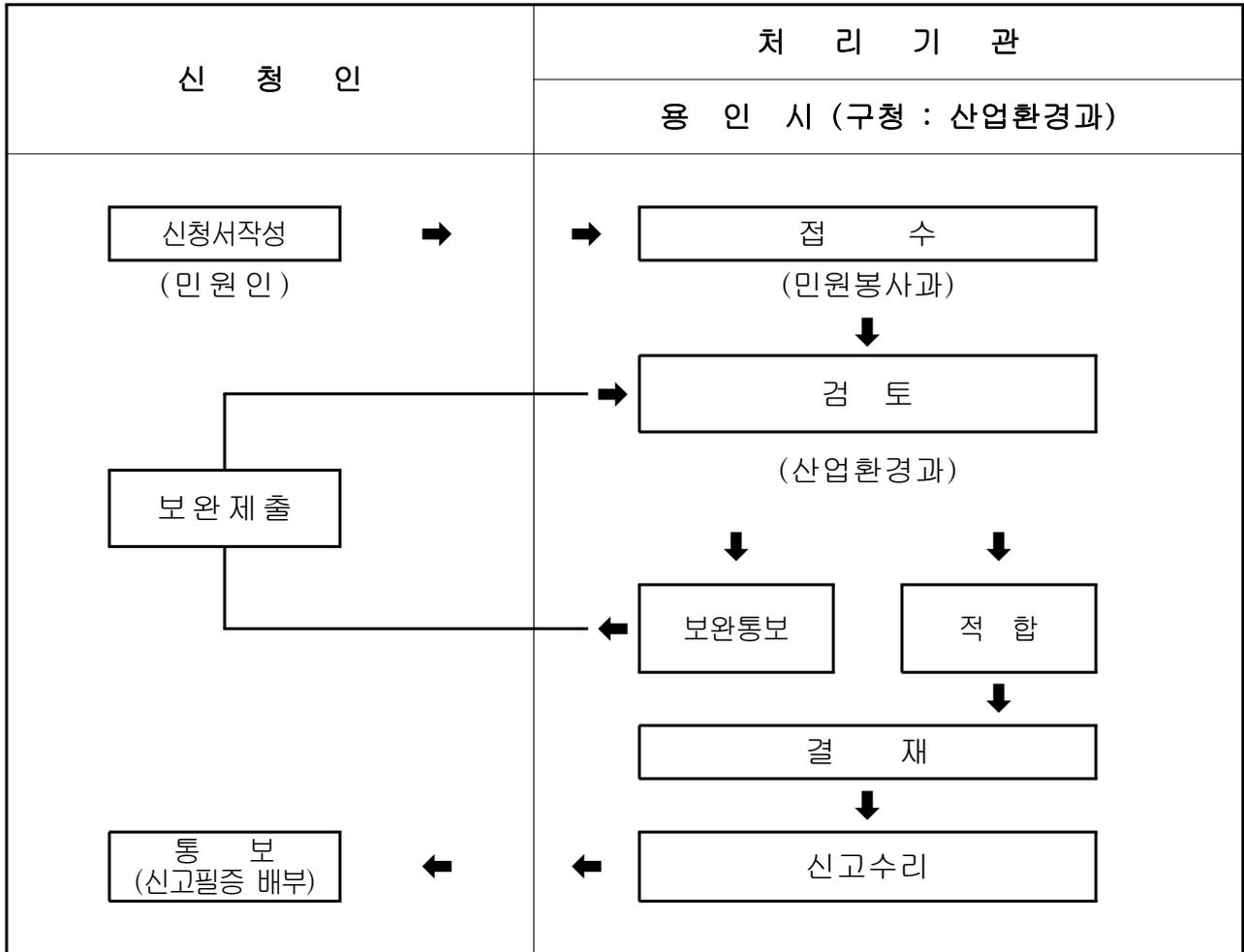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

□ 기본 사항

주 관 부 서	구청 산업환경과	업무담당자(☎)	031-324-5281	
처 리 기 간	4	관 련 부 서		
수 수 료	-	시	도	중앙기관
면 허 세	동지역:12,000원 면지역:3,000원			
지역개발공채	-			
기 타				
근 거 법 규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구 비 서 류	<input type="checkbox"/> 특정공사 사전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예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input type="checkbox"/> 특정공사 변경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 필증 원본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신고대상 범위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 공사.
2. 구조물의 용접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변경신고대상 범위

1.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변경
4. 소음·진동저감대책
5. 공사규모의 10% 이상 확대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설치기준

1. 대상사업 및 사업장 주변 환경에 따라 방음, 방진시설 등의 시설 및 조치를 취함
세부사항(소음진동규제법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 준수)참조

○ 준수사항

1. 소음·진동발생대상사업 여부검토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준수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별표 8] <개정 2007.10.24>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dB(A))

대 상 지 역	시 간 별 소 음 원		아침, 저녁 (05:00 ~ 08:00, 18:00 ~ 22:00)	낮 (08:00 ~ 18:00)	밤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 구 및 관광·휴양개 발진흥지구, 자연환 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 원·공공도서관	확성 기	옥 외 설 치	70 이하	8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 기	옥 외 설 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참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은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나. 2009년 1월 1일부터

(단위: dB(A))

대 상 지 역	시 간 별 소 음 원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 외 설 치	70 이하	8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 외 설 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참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

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dB(V))

시 간 별 대상 지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참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 **관련민원서식**

특정공사사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공사명칭				
⑥ 공사장소재지		(전화 :)		
신고내역	⑦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 공사 규모			
내역	⑨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			
	⑩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⑪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성명)				
⑫현장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 :)		
<p>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귀하</p>				
※ 구비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